

EU	수출현안/ 수입제도 모니터링
----	-----------------

I 통관제도

1. 통관일반사항

□ 관세동맹

- EU의 28개 회원국은 목적상 단일 영역으로,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 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관리 없이 EU 내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 물품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음

□ 한-EU FTA, 7월 1일부터 관세 추가 인하

- 한-EU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양측의 3년차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 되었으며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이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이번 관세 철폐 및 인하는 한-EU FTA 발표 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한 이후 남은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추가 개방임
- 우리나라 측 관세 철폐 품목
 -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품목
- 우리나라 측 관세 추가 인하 품목
 - 소형 승용차(1,500cc 이하),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개 품목
-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제외 물품과 현행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음
- EU 28개 회원국 측 관세 철폐 품목
 -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물품 282개 품목
- EU 측 관세 추가 인하 품목
 - 소형 승용차, 텔레비전, 카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
- EU는 39개 양허제외 및 현행과세 유지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5년 이내 관세 철폐 예정임

2. 통관서류

□ 수입 통관 필요 서류

-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가 구비되어야 함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육류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등이 첨부 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식품의 관세분류번호 (TARIC CODE = HS CODE / EU 관세 분류 번호) 가 기재되어야 함
- 운송회사 혹은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등은 전담 업체에서 준비함

□ 수입 금액별 (6,000유로 기준) 서류작성

- 판매가가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협정 세율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원산지 신고서 문안’ 과 수출자의 서명이 추가된 FTA 인보이스가 필요함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customs authorization none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EXPORTER SIGNATURE AND NAME
 - (1) 해당 국가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 기재하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칸으로 남겨둠
 - (2)원산지 입력
- 6,000유로 이상인 경우, 수출국가에서 인증한 수출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출자 관리번호와 함께 위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

3. 통관절차

□ 통관수속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 리스트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를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통관 의뢰
- 통관 의뢰를 맡은 운송회사 또는 통관 전담 회사에서 수입 신고서 작성
- 수입 신고서를 근거로 해당 관세를 납부 후 통관 완료 됨
- 네덜란드로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 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5일, 육로나 항공 송 수입품은 2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통관에는 대체로 2~3일 소요되며 통관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음
출항 → 입항 → 하선 (보세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납부

■ EU 수입 통관 절차 ■



(자료 : tradenavi.or.kr)

□ 화물의 통관

○ 수입 신고서의 종류

-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
제 3국(유럽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한 후 제3국에 운송하는 경우에도 T1 수입신고서 작성함
-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이 양식을 사용함

○ 온라인 통관제도

-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제 3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위하여 온라인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온라인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 세관이 제공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직접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온라인 통관신청 가능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E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Ⅰ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14.7)Ⅰ

(단위 : %)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9
체코	21	15
덴마크	25	
독일	19	7
에스토니아	20	9
그리스	23	6.5 / 13
스페인	21	10
프랑스	20	5.5 / 10
크로아티아	25	5/13
아일랜드	23	9 / 13.5
이태리	22	10
사이프러스	19	5 / 9
라트비아	21	12
리투아니아	21	5 / 9
룩셈부르크	15	6 / 12
헝가리	27	5 / 18
몰타	18	5 / 7
네덜란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폴란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루마니아	24	5 / 9
슬로베니아	22	9.5
슬로바키아	20	10
핀란드	24	10 / 14
스웨덴	25	6 / 12
영국	20	5

출처: EUROPEAN COMMISSION

4. 통관제도 특이사항

□ EU 집행위, 옥수수, 수수, 호밀에 대해 관세인상

- EU 집행위는 옥수수, 수수, 호밀에 대해 현행 0유로/톤의 관세를 5.32유로/톤으로 인상하여 부과한다고 발표
- 동 조치는 관련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643/2011)과 낮은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동 곡물들에 대해서는 수출시 관세 환급 대상에서도 제외

-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는 2014년 옥수수 생산이 963백만 톤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 이러한 전망에 따라 옥수수 시장가격은 특히, 미국시장에서 급격하게 하락하여 2014.7.1일 기준 203불/톤(FOB 가격기준)으로 2010.8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EU는 GATT협정에 따라 모든 시리얼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였으나, 일부 시리얼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관세에 차이를 둠
- 이는 미국과의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협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시리얼에 대해서는 개별 세계참조가격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관세율을 결정
- 관세율은 효과적인 EU 개입가격에 1.55배를 한 가격과 로테르담 항구의 CIF 수입 가격과의 차이에 기초하여 결정
- 2010.8.17일 이후 옥수수 관세율은 제로(0) 유로/톤으로 부과되었으며 수수와 호밀에 대해서는 2010.10.19일 부터 제로(0) 유로/톤으로 부과
- 2011.7.1일부터 수수와 호밀의 대표 CIF 가격이 옥수수 대표 CIF 가격과 같게 되었으며, 그날부터 수수와 호밀에 대한 관세는 옥수수와 동일하게 됨
-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세할당(tariff quota)은 영향을 받지 않음
- 옥수수에 대한 무관세 쿼타 물량인 277,988톤은 매년 1월1일 부터 개방되며, 2014년에는 7월4일에 동 물량을 소진

□ 상품 분류 변경 사항

- 개요 : EU 집행위는 상기 Regulation들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상품을 분류 하였으며, 동 규정은 관보게재일(2014.7.16)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됨
- 상세내용
 - 첫 번째 칸에 묘사된 상품은 두 번째 칸의 CN 코드로 분류됨

상품명세	분류 (CN code)	분류이유
누르스름한 가루로 채워진 무색의 캡슐로 소매판매용 플라스틱 병에 캡슐 60개 단위로 라벨링 되었으며 다음 성분을 함유: - 글루코사민 염산염 (300mg) - 황산콘드로이틴	유지방, 자당, 아이소글루코오스, 포도당 및 전분을 포함하지 않거나, 중량에 의해 1.5% 이하의 유지방,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2106, 2106 90, 2106 90 92에 의해 분류됨 일일 섭취량을 고려할 때 예방 또는 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CN 코드 3004, 약품으로 분류되지 않

- 메틸 설포닐 메탄 - 소량의 아스코르브산 에테르 (비타민 C)	5% 이하의 자당 또는 아이소글루코오스, 5% 이하의 포도당 또는 전분을 포함한 조제 식품 (2160 90 92)	음 상품은 일정량 형태의 조제식품으로서 식품보충제로 목적으로 사용이 됨으로 CN 코드 2160, 조제식품으로 분류됨
아래 성분으로 구성된 냉동과일(무게비중 %): - 딸기 55 - 바나나 20 - 파인애플 15 - 블루베리 10 상품은 믹스기로 혼합할 수 있는 조각형태의 냉동과일로 봉투에 담겨져 있음	설탕이 중량의 13%를 넘지 않는 초본류 딸기 (0811 10 90)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3(b)조항, 6조항 및 CN 코드 0811, 0811 10, 0811 10 90에 의해 분류됨 상품은 여러 종류의 냉동과일 혼합물로 딸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0811 10 90, 딸기류로 분류됨
소매판매용 200ml, 500ml, 1000ml 병에 담겨있는 액체로 다음 성분을 함유: - 염화나트륨(0,9%) - 멸균수 각 병은 인체공학적 세안컵과 뚜껑을 장치하고 있으며 일회용으로 사용 라벨에 따르면 상품은 비상시에 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눈 세척용으로 사용	기타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 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 따로 분리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 (3307 90 00)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3307, 3307 90 00에 의해 분류됨 상품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판매 형태로 포장되어있으므로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 따라서 상품은 CN 코드 3307, 기타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됨
소매판매용 200ml, 1000ml 병에 담겨있는 액체로 다음 성분을 함유: - 인산나트륨(1-5%) - 인산칼륨(1%) - 멸균수 각 병은 인체공학적 세안컵과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6조항 및 CN 코드 3307, 3307 90 00에 의해 분류됨 상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구성요소의 분리체가 아니므로 CN코드 2835, 인산염으로 분류되지 않음

뚜껑을 장치하고 있으며 일회용으로 사용 라벨에 따르면 제품은 비상시에 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눈 세척용으로 사용		제품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판매 형태로 포장되어있으므로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 따라서 제품은 CN 코드 3307, 기타 화장품 및 화장용품으로 분류됨
조리된 건조국수(약 65g), 조미료(3,4), 식용유(2g), 건조채소(0,8g)로 구성된 상품 제품은 국수 조제품으로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 라벨에 따르면 상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추가해야 함	기타 건조 파스타 (1903 30 10)	Combined Nomenclature 해석통칙 1조항, 3(b)조항, 6조항 및 CN 코드 1902, 1902 30, 1902 30 10에 의해 분류됨 국수가 상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CN 코드 2104, 스프로 분류되지 않음 따라서 제품은 CN 코드 1902, 파스타로 분류됨

5. 관련 웹사이트

- 유럽연합규정: <http://eur-lex.europa.eu/homepage.html>
 - 수입제도: <http://ec.europa.eu/trade/import-and-export-rules/import-into-eu/>
 - 한-EU FTA: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OJ:L:2011:127:TOC>
- 유럽연합: http://europa.eu/index_en.htm
 - 통관제도: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1. 검역일반사항

□ 개요

-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됨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감독함
-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함

□ 농수산물식품의 검역

- 농수산물식품의 검역은 농산물의 경우 산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 (Veteri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의 경우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 농산물의 경우 상기 검역필요 품목은 반드시 검역을 필해야 하며 식품, 어류의 경우 위생검역증(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에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적절한 검역 조치를 취함
- 영국 농수산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증서인 Phytosanitary Certificate (위생검역증)을 발부받아야 영국으로의 수입 가능

-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품의 경우는 영국이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함.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될 경우 영어 번역 첨부 등임

□ 검역 인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 EU 규정 1788/2001에 따라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들을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 제3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이 검역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발행기관 및 제품검역기관
 - 생산자,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 출항국, 수량, 제품코드 (tariff number)
- 이 검역인증서를 유럽 연합 지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의 경우 제품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Port health authority(PHA)에 제출함
- PHA는 이 검역인증서를 Defra 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함
- PHA의 승인 사인과 도장은 검역인증서가 정확하고 제품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유기농 제품이 통관하기 전에 필요함
- 또는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PHA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2. 품목별 검역정보 및 주의사항

□ 수산물

- ‘EC IUU(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은 합법적으로 어획이 됐다는 ‘수산물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함
- 유럽 영토 내 도착 예정시간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수입업체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 받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다음의 경우 추가 증명서류 또는 기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수산제품의 EC 수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입하려는 제품이 어획증명서에 언급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어획증명서가 기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 수입업체가 수산제품이 제14(1) 또는 제14(2)조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상에 어획 원산지 선박으로 등재된 어선이 EC IUU 선박 리스트 또는 제 30조에서 언급된 IUU 선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협력 국가로서 기국(선적국) 당국이 어획증명서를 검증한 경우
- 수산제품의 정의로부터 예외 되는 제품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민물수산제품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얻은 양식 제품
 - 관상용 어류
 - 활굴
 - 가리비 과의 조개(펙턴, 클라미스, 프라코펙텐 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 포함)를 포함한 살아있거나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냉동된 가리비(Coquilles St Jacques (Pecten maximus) 기타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 홍합
 - 바다에서 어획된 것을 제외한 달팽이
 - 처리 및 보존된 연체동물 (molluscs)

- EU는 ‘13.11. 대한민국은 유럽으로부터 불법조업국(IUU) 경고, ‘15.1.에 불법 조업국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 불법조업국으로 지정이 되면 유럽으로의 한국 수산물 수출은 불가능함으로 합법적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어획하도록 노력해야 함

□ 비승인 첨가 물질

- EU 세관은 최근 식품의 비승인 첨가 물질을 더욱 철저하게 검역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유럽 연합에서 비승인하고 있는 첨가 물질을 사전 숙지, 사용 하도록 주의 하여야 함

□ 유전자 변형 쌀

- 유전자 변형 쌀을 이용하여 만든 쌀 과자, 국수, 라면, 떡 등은 유럽연합에서 허가하고 있지 않음
- 중국에서 수입한 쌀로 가공품을 만들 경우, 수입된 쌀의 유전자 변형 여부를 미리 확인 하여 원재료로 인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곰팡이 및 식중독 균

- 건조 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곰팡이 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건조하거나 제습제 첨가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함
- 수산물 및 농산물 중 살모넬라의 감염이 높은 제품들은 수출 이전에 테스트를 실시, 제품의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 유럽연합에서는 식품의 위생과 보관온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함
- 따라서, 냉장 및 냉동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컨테이너의 온도조절에 각별히 주의하여 콜드체인 등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콜드체인의 파열은 제품의 부패와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관련 웹사이트

- 검역근황: www.foodmanufacture.co.uk
- 불법조업국:
 - http://ec.europa.eu/fisheries/cfp/illegal_fishing/info/index_en.htm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86:0001:0032:EN:PDF#page=27>

1. 일반사항

□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 유럽연합 식품 라벨링법 Regulation (EU) No 1169/2011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식품 정보에 대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FIC 규정, Food Information on Consumers' 라고 알려져 있음
- 이 규정은 유럽연합내 기존 식품 라벨링법을 수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4년 12월 13일부터 식품 라벨링법 No 1169/2011의 적용이 시작될 예정임
- 새 라벨링법은 일반 라벨링, 외양, 식품의 광고에 관한 2000/13/EC와 영양 정보에 관한 90/496/EEC 을 통합한 것으로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EU 신규 식품 라벨링법 적용 일정

- 2011년 12월 12일: Regulation (EU) No 1169/2011 발효
 - 2014년 12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거나 (EC) No 1169/2011 규정의 필수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해당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음
- 2014년 01월 01일: 다진 육류의 특정 필수 표기사항 적용 시작 (부속조항 VI 의 B 부분)
- 2014년 12월 13일: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 적용 시작
- 2016년 12월 13일: 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조항 적용 시작
 - 2014년 12월 13일부터 2016년 12월 13일 사이에는 새로운 영양정보 라벨링 실시는 업체의 자발성에 따름

☐ 의무 기재사항

- ☐ 제품명
- ☐ 제품성분 리스트
- ☐ 알레르기 항원인자
- ☐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 의 함유량
- ☐ 제품의 실중량
- ☐ 유효기간 (최소한의 기간 또는 사용가능날짜)
- ☐ 보관 방법
- ☐ 회사명 및 주소
- ☐ 원산지
- ☐ 사용법
- ☐ 알코올 강도
- ☐ 영양정보

☐ 주요 변경내용

- ☐ 의무 기재사항 중 알레르기 항원인자, 원산지, 영양정보를 중심으로 개정됨
- ☐ 이중 원산지의 경우, 한국 업체들이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없는 육류 제품
의 원산지 내용만 변경됨

2. 표시방법 유의점

☐ 알레르기 항원인자

- ☐ 아래 표에 명시된 성분 또는 가공 보조제 또는 이들 성분에서 유래한 물질
로, 식품 제조 또는 손질 과정에서 사용되고 어떠한 변형된 형태로든 완제품
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품성분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함
- ☐ 또한 보다 명확하게 다른 성분들과 구분하여 알레르기 항원인자를 강조할 때
는 'Contains' 라는 표현 다음에 알레르기 항원인자 성분을 표기해야 함
- ☐ 구체적 표기 방식은 제품성분 리스트 규정에 따름

1.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카뭇트 또는 이들의 합성종 및 제품.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밀을 기본으로 한 텍스트로스를 포함한 포도당 시럽 - 밀을 기본으로한 말토덱스트린 - 보리를 기본으로 한 포도당 시럽 -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곡물
2. 갑각류와 해당 제품들
3. 계란과 해당 제품들
4. 어류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비타민 또는 카로테노이드를 위한 보인자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 맥주와 와인에 청징제로 사용된 생선 젤라틴 또는 부레폴
5. 땅콩과 해당 제품들
6. 대두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완전히 정제된 대두유와 지방 - 대두에서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혼합된 토코페롤 (E306), D-알파 토코페롤, D-알파 토코페롤 초산염, D-알파 토코페롤 숙신산 - 대두에서 유래한 식물 스테롤과 식물 스테롤 에스테르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 대두에서 얻어진 식물성 오일 스테롤로 제조된 스타놀 에스테르
7. 우유와 해당 제품들. 단, 아래 성분은 제외함 -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유장 - 락티톨
8. 견과류: 아몬드 (<i>Amygdalus communis L.</i>), 헤이즐넛 (<i>Corylus avellana</i>), 호두 (<i>Juglans regia</i>), 캐슈 (<i>Anacardium occidentale</i>), 피칸 너트 (<i>Carya illinoensis (Wangenh.) K. Koch</i>), 브라질넛 (<i>Bertholletia excelsa</i>), 피스타치오 너트 (<i>Pistacia vera</i>), 마카다미아 또는 퀸즐랜드 너트 (<i>Macadamia ternifolia</i>)과 해당 제품들. 단, 농산물의 에틸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 증류액 제조에 사용되는
9. 셀러리와 해당 제품들
10. 겨자와 해당 제품들
11. 참깨와 해당 제품들
12.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상태의 총 SO ₂ 량을 기준으로 아황산과 황화의 농도가 10mg/kg 또는 10mg/l 인 경우
13. 루핀과 해당 제품들
14. 연체동물과 해당 제품들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II)

□ 특정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의 함유량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성분 또는 성분의 카테고리의 함유량을 기재해야 함
 - 제품 이름에 성분 이름이 나타나 있을 때
 - 제품 라벨에 언어, 그림 또는 그래픽으로 성분을 강조했을 때
 - 성분의 이름 또는 생김새 때문에 다른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을 특징화하여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때
 - 단, 'with sweetener(s)' 또는 'with sugar(s)'라는 문구로 커버할 수 있는 경우, 첨가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정보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함유량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가
 - 1) 수분 제외 실중량을 이미 기재했을 때
 - 2) 다른 유럽연합 조항에 따라 라벨링에 이미 함유량이 표기되었을 때
 - 3) 향미 목적으로 극소량을 사용했을 때
 - 4) 제품의 이름에 이미 나타나 있을 때
-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별 함유량은 아래와 같이 표기함
 - 제품 사용 시점에서 각 성분의 양에 부합하는 %로 표기
 - 제품 이름의 바로 옆 또는 제품성분 리스트와 이어 표기
 - 제품이 열처리 또는 다른 처리 후에 수분이 손실될 경우, 완제품에 가장 가까운 상태의 성분별 함유량으로 표기
 - 휘발성 성분의 양은 완제품 중량을 기준으로 표기
 - 농축 또는 건조에 사용된 성분으로 제조 과정에서 재합성된 성분의 양은 농축 또는 건조되기 이전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되는 농축 또는 건조 제품의 경우, 성분의 양은 재구성된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비율 표기

□ 영양정보

-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영양정보는 아래와 같음
 - 열량
 -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소금의 양
- 의무 영양정보 외에 보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영양정보는 아래와 같음
 - 불포화지방
 - 다불포화지방
 - 폴리올
 - 전분
 - 식이섬유
 - 비타민 또는 미네랄: 상당량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 비타민 또는 미네랄 함유량에 대한 영양정보 기재시 참고 할 성인기준 1일

Vitamin A (μg)	800	Chloride (mg)	800
Vitamin D (μg)	5	Calcium (mg)	800
Vitamin E (mg)	12	Phosphorus (mg)	700
Vitamin K (μg)	75	Magnesium (mg)	375
Vitamin C (mg)	80	Iron (mg)	14
Thiamin (mg)	1.1	Zinc (mg)	10
Riboflavin (mg)	1.4	Copper (mg)	1
Niacin (mg)	16	Manganese (mg)	2
Vitamin B6 (mg)	1.4	Fluoride (mg)	3.5
Folic acid (μg)	200	Selenium (μg)	55
Vitamin B12 (μg)	2.5	Chromium (μg)	40
Biotin (μg)	50	Molybdenum (μg)	50
Pantothenic acid (mg)	6	Iodine (μg)	150
Patassium (mg)	2,000		

비타민 및 미네랄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음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A)

- 상당한 양의 비타민 및 미네랄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음료를 제외한 제품의 100g 또는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음료 제품의 100ml 분량에 함유되어 있는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7.5%일 때
 - 패키지가 1회 분량일 경우 위 표의 비타민 및 미네랄의 양이 권장 섭취량의 15%일 때

- 비타민 및 미네랄 외에 영양정보 기재시 참고 할 성인기준 1일 권장 섭취량은 아래와 같음

열량 또는 영양소	섭취 기준
열 량 (Energy)	8,400kj / 2,000kcal
지방 총량 (Total Fat)	70g
포화 지방 (Saturates)	20g
탄수화물 (Carbohydrate)	260g
설탕 (Sugars)	90g
단백질 (Protein)	50g
소 금 (Salt)	6g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II Part B)

- 열량 및 영양소 표시 단위 변환표는 아래와 같음

- carbohydrate	17 kj/g - 4 kcal/g
- polyols	10 kj/g - 2.4 kcal/g
- protein	17 kj/g - 4 kcal/g
- fat	37 kj/g - 9 kcal/g
- salatrims	25 kj/g - 6 kcal/g
- alcohol (ethanol)	29 kj/g - 7 kcal/g
- organic acid	13 kj/g - 3 kcal/g
- fibre	8 kj/g - 2 kcal/g
- erythritol	0 kj/g - 0 kcal/g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IV)

- 영양성분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과 표현을 사용하여 표기함

energy	kj/kcal
fat	g
of which	
- saturates,	g
- mono-unsaturates,	g
- polyunsaturates,	g
carbohydrate	g
of which	
- sugars,	g
- polyols,	g
- starch,	g
fibre	g
protein	g
salt	g
vitamins and minerals	

(자료: 유럽연합 No 1169/2011 Annex XV)

3. 유통시 문제사례, 시사점

□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사례

- 아스다의 초콜렛 쿠키는 생강을 포함하고 있어 sulphites 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라벨에 sulphites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sulphites에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함
- 해로즈 백화점에서 중국 신년 기념으로 제조한 초콜렛에 우유와 대두가 함유되어 있음에도 이를 라벨에 기재하지 않아 우유와 대두에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함
- 세인스버리의 Bakewell Cake은 우유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라벨에 기재되지 않아 우유에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함
- 막스 앤 스펜서의 Bengali Cod Curry는 우유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라벨에 기재되지 않아 우유에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함
- Kettle Foods 사의 오븐에 구워진 감자칩 제품에는 글루텐이 함유된 밀가루가 함유되어 있으나 성분 리스트에는 밀가루를 기재하고 포장 앞면에는 ‘무글루텐’ 이라고 적어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함
- RS UK Foods사의 두 당류 제품에는 밀가루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으나 제품 알레르기 정보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 밀가루 또는 글루텐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에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함
- 마스 푸드사 (Mars Food UK Ltd)는 잉글 벤 브랜드의 일부 중국 스타일 밥 제품에 우유와 달걀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제품 패키지에는 이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제품 환수조치를 실시함
- 시밍턴사 (Symington's Ltd)는 아인슬리 해리엇 브랜드의 렌틸 달 제품이 우유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라벨에 기재하지 않아 해당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민감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품 환수조치를 실시함

□ 시사점

- 유럽에서는 특정 식품 성분에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들이 많아 제품 패키지에 알레르기 항원 정보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매우 중요시 여김
- 통관/검역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중 유통 시에도 제품회수 또는 리콜조치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항원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함

IV

통관 서류 및 검역 불합격 사례

1. '14년 1월~9월 한국식품 검역 불합격 사례

□ 문제가 된 한국 사례는 아래와 같이 한 건 검색됨

날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사유	후속조치
09월 10일	이탈리아	한국	냉동 황새치 swordfish 에서 수은 mercury (1.93 mg/kg - ppm) 검출	담당기관에 통지

(자료: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